

2023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(Pre-TIPS / Post-TIPS)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

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2023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(Pre-TIPS/Post-TIPS)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2월 27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※ 본 모집공고는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기업(프리팁스)이거나 팁스를 통해 검증된(완료판정) 기업(포스트팁스)을 위한 모집공고로, 최종 선정 후 협약을 통해 프리팁스(10개월), 포스트팁스(18개월)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.

□ 사업목적 및 규모

- 창업기획자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
- 프리팁스 43개사 내외, 포스트팁스 72개사 내외 선정 예정

세부 사업명	지원 대상	지원규모	지원 기간	지원 한도	기업 부담금	신청 접수		선정 평가
프리팁스 (Pre-TIPS)	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*	43억원 (43개사 내외)	10 개월	최대 1억원	총 사업비의 30% 이상	1차	2.27~3.24	4~5월
						2차	6.1~6.29	7~8월
						3차	9.1~9.28	10~11월
포스트팁스 (Post-TIPS)	팁스 R&D '완료(성공)'판정을 받은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**	259.2억원 (72개사 내외)	18 개월	최대 5억원	총 사업비의 30% 이상	1차	2.27~3.24	4~5월
						2차	6.1~6.29	7~8월

* 전체 지원규모 60% 이상 지방소재 창업기업을 선발하며,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**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

*** 접수, 평가, 선정 등 추진일정 및 규모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 등을 통해 통지 예정

(1) 프리팁스(Pre-TIPS)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(Seed)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(TIPS) 창업기업으로 육성

* 전체 지원규모의 60%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(법인등기부등본 및 현장실사 통해 확인)으로 선발하여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

□ 사업내용

-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10개월간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
 -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정

< 사업내용 요약 >

구분	지원기간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부담금	
			현금	현물
프리팁스	10개월	최대 1억원 (총 사업비의 70%)	총 사업비의 30% 이상	
			10% 이상	20% 이하

* 정부지원금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

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재료비 등으로 계상가능

- (선정규모) 43개사 내외 (비수도권 소재기업 60%이상 선발)

주관기관명	지원규모(개사)		합계
	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	지방	
한국엔젤투자협회	17개사 내외(40%미만)	26개사 내외(60%이상)	43개사 내외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사업공고일 기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 (‘사업을 개시한 날’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) 중 아래의 요건①과 요건②를 **모두** 충족하는 기업

※창업기업 여부 확인 관련 참고사항※

- * ‘사업을 개시한 날’ 기준
 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 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
- *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,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. **[붙임1]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**
- 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’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* 업력, 지분구조 등 창업기업 여부 확인 추가 진행될 수 있음

- **요건①**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

*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

** 협약체결일 기준 근로자 2인 미만인 경우 협약 이후에도 제재될 수 있음

- **요건②** 신청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*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(투자확약 불인정, 투자계약 후 주금 납입 및 등기완료 必)

< 투자자의 종류 >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창업기획자(중소벤처기업부 등록) |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(LLC 등 포함) |
| ③ 기업형(중소·벤처기업 및 중견·대기업 등) | ④ 글로벌 투자·보육 전문기관* |
| ⑤ 기타(기술지주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) | ⑥ 개인투자조합** |

*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(지사 등)이 있으며,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 한하여 인정

**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

□ 신청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< ①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< ②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 ([붙임2])

④ 중소기업창업부(舊중기청) '팁스R&D' 또는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*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
- * 창업(사업자 등록)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확보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- ** 중소기업창업부의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, 먼저 협약한 사업만 참여가 가능 (다른 지원사업 협약 이후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탈락처리) ※ 중단 포기자인 경우 신청 불가
- *** 동 사업 접수마감일 이후 3개월 내 기 참여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은 가능 (단, 선정평가 후 협약 시 협약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선정 및 협약 불가할 수 있음)

⑤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창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(기업)

⑥ 중소기업창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(기업)

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(기업)

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
⑨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⑩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(기업)

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⑫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
- * 신용도 및 과거 이력, 특정 업종영위 등에 따라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

⑬ 기타 중소기업창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3

지원내용

□ 지원 내용

○ 사업화자금 :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

- 사업화자금(정부지원금)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, 사업 수행(협약)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개월

* 총 사업비(100%) 구성: 정부지원금(70% 이하) + 창업기업 대응자금(30% 이상)

< 사업비 구성 예시 >

총사업비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(총 사업비의 30% 이상)	
		현금	현물
143백만원	100백만원	15백만원	28백만원
100%	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

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하며 대응자금 미집행 시 제재조치 될 수 있음

< 사업비 집행비목 >

비목	비목 정의
재료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기계장치 구입비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
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(대표자 지급 불가)
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 임차비, 사무실임대료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회계감사비, 법인설립비 등)
여비	•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
교육훈련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4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

- (1차) 2023. 2. 27.(월) ~ 3. 24.(금), 18:00까지
- (2차) 2023. 6. 1.(수) ~ 6. 29.(목), 18:00까지
- (3차) 2023. 9. 1.(금) ~ 9. 28.(목), 18:00까지

* 예산 소진 시, 2~3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

※ 신청 시 유의사항 ※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'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(마감일 접속 오류에 대해서는 구제불가)
* 신청·접수 마감일 18: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, 18: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(1단계 이상 저장 과제)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:00까지 작성항목 수정,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. 마감시간 18: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
- ② 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
-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

□ 신청방법

- K-Startup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< 온라인 신청 절차 >



*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[별첨4] 창업기업 온라인 '사업신청 매뉴얼' 참고

** k-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(인터넷익스플로러, 크롬, 엣지, 파이어폭스, 웨일) 또는 MAC OS(사파리, 크롬)로 접속 가능, **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**

*** K-startup 홈페이지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, SCI(서울신용평가정보)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,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
***** 사업에 참여하려는 인력 모두 K-스타트업 회원가입 필수

-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온라인 시스템(PMS)를 통해 제출

< 제출서류 목록 >

제출서류	주의사항	제출방식
① (양식1) 사업계획서	PDF 형태 첨부	온라인시스템(PMS) 업로드 ※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'회사명.zip' 으로 압축 후 제출 *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20MB 초과 불가
② (양식2) 신청 기본사항	온라인 입력	
③ (양식3) 참가신청서	온라인 입력	
④ (양식4) 개인정보 제공·이용·수집동의서	온라인 입력	
⑤ 투자계약서·투자금 납입내역	PDF	
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	
⑦ 투자사실확인서		
⑧ 청렴서약서		
⑨ 주주명부	창업기업 여부확인	
⑩ 총사업자등록내역		
⑪ 사업자등록증(다른 '계속'사업자 보유 시)		
⑫ 폐업사업사실증명원('폐업'사업자 보유 시)	PDF	
⑬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명부	PDF	
⑭ 기타 필수서류 등(가점관련 증빙서류)	가점 해당시 첨부	
⑮ 비수도권 소재 협약서	해당시	

* 사업계획서 양식 : "[별첨1] 프리팁스 사업계획서 서식" 참조

**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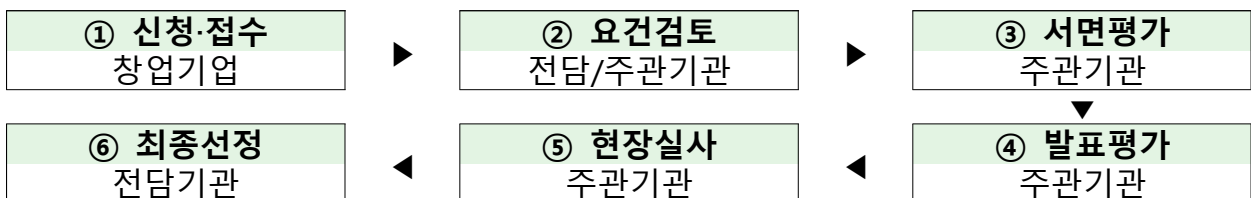
***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요청 가능하며, 창업기업 여부 확인 서류는 기존 발급 받았던 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가능

5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절차

- 4단계 평가(요건검토 → 서류평가 → 발표평가 → 현장실사)로 평가 진행되며, 각 평가는 허들식 평가로 진행
- 「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제11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를 수행

< 창업기업 평가 절차(안) >



* (전담기관) 창업진흥원, (주관기관) 한국엔젤투자협회

**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 될 경우, 일부 절차 동시 진행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- ① (요건검토)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기본 신청자격(지원 대상, 의무사항, 채무불이행 등) 및 신청제의 대상여부, 가점* 등을 검토
 - *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
- ② (서면평가) 신청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 문제인식, 해결방안 및 투자계약 적정성 등을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
 - * 평가지표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발표평가 제외
- ③ (발표평가)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성, 기술성, 사업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
 - * 평가지표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현장실사 제외
 - **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 될 경우, 서면 및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으며, 가점은 발표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정
- ④ (현장실사)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정밀 검토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추천
 - 가장납입, 허위서류 등 제출자료 내용과 다른 경우,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

□ 평가지표

- 선정평가는 문제인식(Problem), 실현가능성(Solution), 성장전략(Scale-up), 팀 구성(Team) 등 4가지 평가지표(P-S-S-T)를 활용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(문제인식)와 해결방안(필요성) 등
실현가능성	•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방법, 경쟁력 확보 방안 등
성장전략	•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, 자금조달 방안 등
팀(기업) 구성	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

- 전략 기술분야기업,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총 4개 항목에서 각 1점 최대 4점의 발표평가 가점 부여

< 가점 항목 및 점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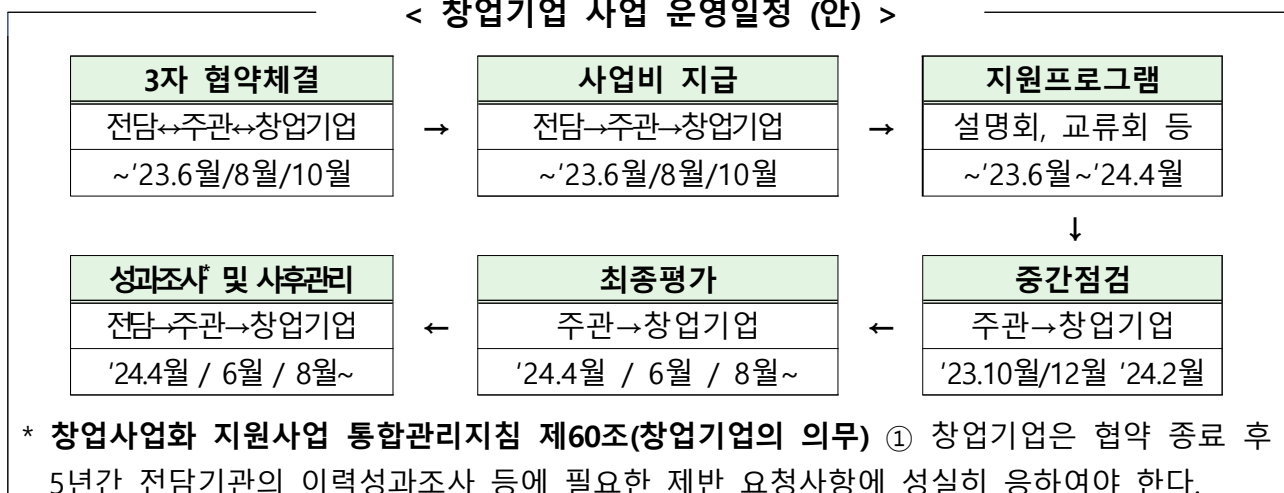
가점 세부 항목	점수	비고
1) 전략 기술분야(소재·부품·장비, 10대 초격차 분야) [별첨3 참조]	1점	최대 4점
2)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가입 기업	1점	
3) 팀 창업 (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인 이상)	1점	
4) 엔젤징검다리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지역소재 기업	1점	

□ 최종선정

-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,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배정 및 기업 최종 확정
 - 선정된 창업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60% 이상을 지방소재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기업으로 선정
 - *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(본사)로 구분, 현장실사 시 확인
- 창업기업 선정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, 사업비계좌 개설 및 3자(창업기업-주관기관-전담기관) 협약 체결 후 사업화자금 지급

□ 사업 운영일정

< 창업기업 사업 운영일정 (안) >



※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(2) 포스트팁스(Post-TIPS)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팁스(TIPS)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 중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성장(Scale-up) 집중 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

□ 사업내용

-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“완료(성공)” 판정 기업의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자금 18개월간 최대 5억원 지원
 -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정

< 사업내용 요약 >

구분	지원기간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부담금	
			현금	현물
포스트팁스	18개월	최대 5억원 (총 사업비의 70%)	총 사업비의 30% 이상	
			10% 이상	20% 이하

* 정부지원금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

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재료비 등으로 계상가능

*** 아기유니콘 200육성사업에 참여했던 경우,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금만큼 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

- (선정규모) 72개사 내외

< 포스트팁스 주관기관 >

기관명	기관설명	지원규모 (개사)	소재지
한국과학기술연구원	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, 스케일업, 글로벌 진출 지원	72	서울
한국벤처캐피탈협회	산업별 투자유치지원, 투자연계형 R&D, 벤처확인제도 등의 기업 지원사업 운영		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①**창업기업**(사업공고일 기준 ‘사업을 개시한 날’*로부터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) 중 ②**후속투자유치 금액**이 100억원 미만**이며, 아래 ③**요건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**하는 기업

* 업력 산정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을 기준(법인)

** 후속투자 유치 금액은 팁스 선정이후 유치한 국내·외 투자금액의 합

- **요건①** 팁스 R&D 사업의 ‘후속투자 유치’ 성공조건*을 달성하여 “성공” 판정을 받은 팁스 졸업기업

* 팁스 선정 후 후속 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VC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

- **요건②**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 R&D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*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

*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(협약체결)이후 실적만 인정

< ‘후속투자 유치’ 외 팁스(TIPS) 성공 기준(5개 중 1개 이상 달성) >

- ① M&A성사 (10억원 이상), ② 기업공개 (IPO, 코넥스 포함),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,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, ⑤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

※ (참고사항) 단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

- *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: 「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」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45호) [별표1]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
→ **창업진흥원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창업 분야 확인**

<23개 신산업 창업 분야>

인공지능	지능형 로봇	의료기기	스마트홈
빅데이터	스마트제조	기능성 식품	신재생에너지
5G+	시스템반도체	드론·개인이동수단	이차전지
블록체인	자율주행차	미래형 선박	CCUS(탄소포집활용저장)
서비스플랫폼	전기수소차	재난/안전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
실감형콘텐츠	바이오	스마트시티	

□ 신청 제외 대상

① 틱스 선정(협약체결) 이후 국내·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

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< ①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< ②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 ([붙임2])

⑤ 중소벤처기업부(舊중기청) '틱스R&D' 또는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*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
* 창업(사업자 등록)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확보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
**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, 먼저 협약한 사업만 참여가 가능 (다른 지원사업 협약 이후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탈락처리) ※ 중단 포기자인 경우 신청 불가

*** 동 사업 접수마감일 이후 3개월 내 기 수행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은 가능

(단, 선정평가 후 협약 시 협약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선정 및 협약 불가할 수 있음)

⑥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(기업)

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(기업)

⑧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(기업)

⑨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
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(기업)

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⑬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
* 신용도 및 과거 이력, 특정 업종영위 등에 따라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

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지원 내용

○ 사업화자금 : 정부지원금 최대 5억원 지원

- 사업화자금(정부지원금)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, 사업 수행(협약)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8개월

* 총 사업비(100%) 구성: 정부지원금(70% 이하) + 창업기업 대응자금(30% 이상)

< 사업비 구성 예시 >

총사업비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(총 사업비의 30% 이상)	
		현금	현물
500백만원	350백만원	50백만원	100백만원
100%	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

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하며 대응자금 미집행 시 제재조치 될 수 있음

< 사업비 집행비목 >

비목	비목 정의
재료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기계장치 구입비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
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(대표자 지급 불가)
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 임차비, 사무실임대료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회계감사비, 법인설립비 등)
여비	•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
교육훈련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4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

○ (1차) 2023. 2. 27.(월) ~ 3. 24.(금), 18:00까지

○ (2차) 2023. 6. 1.(수) ~ 6. 29.(목), 18:00까지

* 예산 소진 시, 2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

※ 신청 시 유의사항 ※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'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(마감일 접속 오류에 따른 구제불가)
* 신청·접수 마감일 18: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, 18: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 (1단계 이상 저장 과제)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:00까지 작성항목 수정,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. 마감시간 18: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
- ② 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
-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

□ 신청방법

○ K-Startup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< 온라인 신청 절차 >



*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[별첨5] 창업기업 온라인 '사업신청 매뉴얼' 참고

** k-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(인터넷익스플로러, 크롬, 엣지, 파이어폭스, 웨일) 또는 MAC OS(사파리, 크롬)로 접속 가능, **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**

*** K-startup 홈페이지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, SCI(서울신용평가정보)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,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
**** 공고 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대표자 아이디 및 소속, 성명이 필요하며, 권한 부여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소 신청 3일 전까지 요청 필수

***** 사업에 참여하려는 인력 모두 K-스타트업 회원가입 필수

-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온라인 시스템(PMS)를 통해 제출

< 제출서류 목록 >

제출서류	주의사항		제출방식
① (양식1) 사업계획서	PDF 형태 첨부		온라인시스템(PMS) 업로드 ※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'회사명.zip' 으로 압축 후 제출 *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20MB 초과 불가
② (양식2) 신청 기본사항	온라인 입력		
③ (양식3) 참가신청서	온라인 입력		
④ (양식4) 개인정보 제공·이용·수집동의서	온라인 입력		
⑤ 투자계약서·투자금 납입내역	PDF		
⑥ 청렴서약서			
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		
⑧ 팁스 졸업 성공 공문			
⑨ 주주명부			
⑩ 총사업자등록내역			
⑪ 사업자등록증 (다른 '계속'사업자 보유 시)			
⑫ 폐업사업사실증명원 ('폐업'사업자 보유 시)	창업기업 여부확인	PDF	
⑬ 기타 필수서류 등(가점관련 증빙서류)	가점 해당시 제출		

* 사업계획서 양식 : "[별첨2] 포스트팁스 사업계획서 서식" 참조

**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***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요청 가능하며, 창업기업 여부 확인 서류는 기존 발급 받았던 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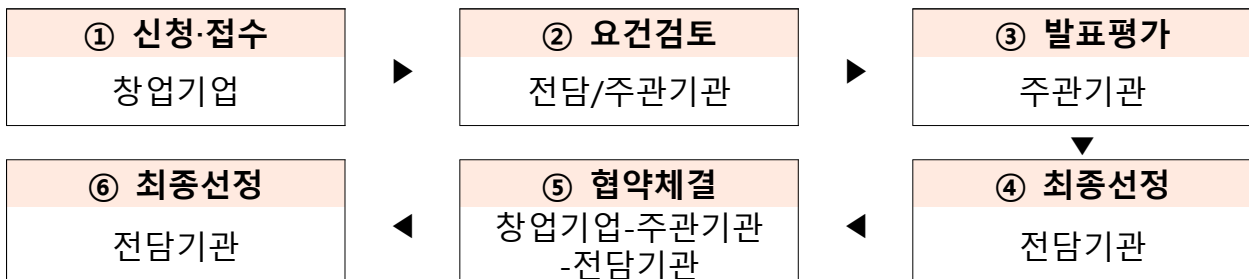
5

평가 및 선정

□ 평가절차

- 요건검토(지원 대상 여부 등) 후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2단계 평가로 평가 진행되며, 각 평가는 허들식 평가로 진행
- 「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제11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를 수행

< 포스트팁스(Post-TIPS) 선정 절차 >



* 전담기관 : 창업진흥원, 주관기관 :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□ 평가방법

- ① (요건검토)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기본 신청자격(지원 대상, 의무사항, 채무불이행 등) 및 신청제외 대상여부, 가점* 등을 검토

*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

- ② (발표평가) 신청서류의 내용 검토 및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

* 평가지표별 기준점수 미달 시 예정보다 더 적게 선정할 수 있음

※ 종합평점 = 발표평가(100점) + 가점(최대 3점)

□ 평가지표

- 선정평가는 문제인식(Problem), 실현가능성(Solution), 성장전략(Scale-up), 팀 구성(Team) 등 4가지 평가지표(P-S-S-T)를 활용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(문제인식)와 해결방안(필요성) 등
실현가능성	•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방법, 경쟁력 확보 방안 등
성장전략	•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, 자금조달 방안 등
팀(기업) 구성	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

- 청년창업기업 1점, 청년 인력 채용 1점,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에 대하여 최대 3점의 가점 부여

< 가점 항목 및 점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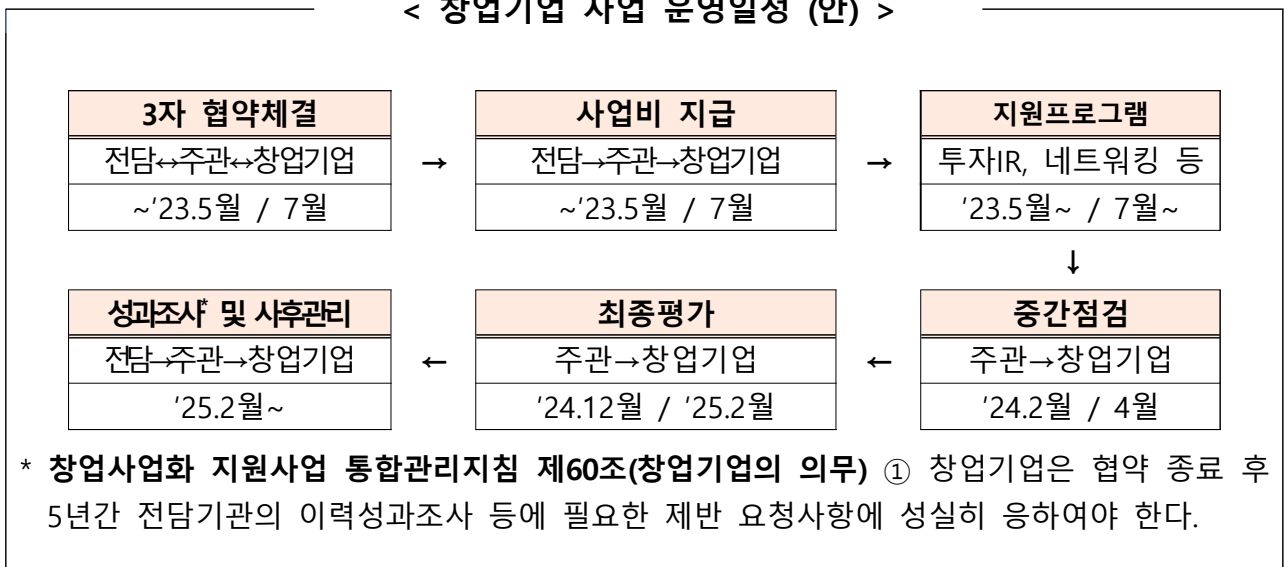
가점 세부 항목	점수	비고
1) 청년창업기업 (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, 공동·각자 대표는 1인이상)	1점	최대 3점
2) 청년인력채용 * 전체 고용인력(직접 고용형태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) 중 청년인력(만34세 이하)이 50% 이상(대표자 제외)인 경우	1점	
3)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가입 기업	1점	

□ **최종선정**

-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,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배정 및 기업 최종 확정
- 창업기업 선정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, 사업비계좌 개설 및 3자 (창업기업-주관기관-전담기관) 협약 체결 후 사업화자금 지급

□ **사업 운영일정**

< 창업기업 사업 운영일정 (안) >



※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(3) 공통사항

1 선정자의 의무

□ **의무 및 역할**

- 선정자는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및 「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 세부 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체결 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(현금)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*

*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0조(창업기업의 의무)

2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‘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’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선정자는 동 공고문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세부관리기준, 전담기관,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 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
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-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'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수행 가능(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)
 - * **(주의) 동시 선정 시,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**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신청을 완료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 참여가 가능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- 전 평가 과정에 창업자(팀) 본인(대표),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, 선정대상에서 제외
-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(통보일 기산, 휴일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
 - *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[붙임 제4호] 참고
 - ** 단순 평가 불복에 따른 재평가 이의제기 불가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
◆ (참고) 정부지원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**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**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창업자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,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‘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
-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, 협약 해약,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

□ 기타 유의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」 및 「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4

기타사항

□ 문의처

- 고객센터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문의 : 국번없이 1357
- 틱스 지원사업 문의처

구 분		담당 기관	전화번호
프리팁스 (Pre-TIPS)	주관기관	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	02-3440-7421
	전담기관	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	(국번없이) 1357
포스트팁스 (Post-TIPS)	주관기관	한국과학기술연구원 흥릉강소특구사업단	02-958-6438 (zihyun@kist.re.kr)
		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	02-2156-2125 (invest@kvca.or.kr)
	전담기관	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	(국번없이) 1357
시스템 문의(기타)		중소기업 통합 콜센터	(국번없이) 1357
프로그램 홈페이지		www.jointips.or.kr / www.k-startup.go.kr	

【붙임 1】 창업여부 기준표

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		창 업 창업아님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 업 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	이종창업	-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동종창업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		창업아님
조직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	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영 시행(2020.10.8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
【붙임 2】 지원제외 대상 업종

지원제외 대상 업종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희주점업	56211
2	무도유희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